

1. 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등(제8조~제10조)

건조·개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수리'의 범위 규정, 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3종을 신설함

나.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기준 마련(제11조)

선정지역 요건, 신청 주체, 신청 주체의 물적·재정적 투자 및 행정적 지원계획 등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40일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사전 심의 요청중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수리
2. 상부구조물 및 부가물의 수리
3. 1호부터 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선체부분에 대한 수리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등록자증 사본
2.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설
· 장비·인력 명세서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건조·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건조·개조규정”이라 한다)

가. 건조·개조 공정

나. 품질관리

제8조의2(어선 건조·개조업 변경등록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 건조·개조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선 건조·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어선 건조·개조업 등록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항이 영 별표 1의3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영 별표 1의3에 적합함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등)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와 관련된 설비업자 등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어선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위치할 것
3.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4. 지역의 주요산업과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이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5.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6.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관할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목적
3.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밖의 부득이한”을 “이에 준하

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대상	건조업	개조업	
선체 재료	강화플라스틱(FRP)재[], 강재[], 알루미늄합금재[], 목재[]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p>1. 등록하려는 경우</p> <p>가. 사업자등록증 사본</p> <p>나.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p> <p>다.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기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인력 명세서</p> <p>라.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조·개조규정 등</p> <p>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p> <p>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p> <p>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p>
-------------	-------------------------------------------------------------------------------------------------------------------------------------------------------------------------------------------------------------------------------------------------------------------------------------------------------------

유의사항

1. 벌칙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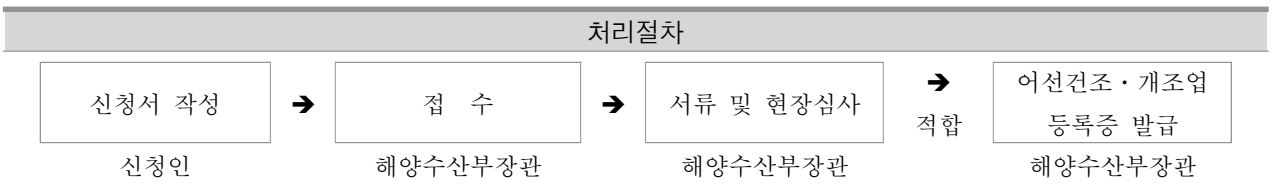
-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단, 아래 가목과 마목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 나. 「어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다. 「어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개조업을 한 경우
- 라. 「어선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 마.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등록 결격사유

- 「어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관리대장

(앞쪽)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업체명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업종					
업 종	등록업종	등록업종(변경)	등록업종(변경)		
건조(재료)					
개조(재료)					
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시설 소재지	소유형태		
장비 현황					
순번	장비명	규 격	취득일자	비 고	
인력 현황					
순번	성명	자격	자격(경력) 수첩번호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u> </u> - <u> </u> <u> </u>		
사 업 자	성명(법인명) Name(Company)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Date of Birth(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등록 대상 Object of Resistrati on	건 조 업 New Building Shipyard	개 조 업 Conversion Shipyard
선체 재료 Ship's Material		
비 고 Remarks		
<p>「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design and shipy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p>		

210mm×297mm[보존용지(1층) 2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신청)</u></p> <p><u>①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수리</u> <u>2. 상부구조물 및 부가물의 수리</u> <u>3. 1호부터 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선체부분에 대한 수리</u> <p><u>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등록자증 사본</u> <u>2.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u> <u>3.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설·장비·인력 명세서</u> <u>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건조·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건</u>

<신 설>

<신 설>

<신 설>

조·개조규정”이라 한다)

가. 건조·개조 공정

나. 품질관리

제8조의2(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 건조·개조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항이 영 별표 1의3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영 별표 1의3에 적합함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의 취

<신 설>

소 등) ①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와 관련된 설비업자 등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어선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위치할 것
3.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4. 지역의 주요산업과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이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5.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6.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더라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선 건조·개조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로 선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관할하는 지역을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목적
3.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관리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② (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2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1의3 -----

-----.

